

학생지도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: 1997.01.03.

개정: 2004.11.01.

개정: 2009.02.06.

개정: 2012.07.02.

개정: 2014.11.06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학칙 제8장 및 학생회 회칙 제6장에 의하여 학생의 생활지도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함으로서 효율적인 학생지도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며, 지도위원은 대학본부 각 보직처장 및 학과장으로 구성하며 직원 1명을 간사로 둔다.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소집 및 심의) ① 본 위원회는 학사운영처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, 의장의 필요에 따라 위원회 이외의 인사에게 임석 발언을 허락할 수 있다.

②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학생회 회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.
2. 학생회 조직, 편제, 임원에 관한 사항.
3. 학생회 회비 책정에 관한 사항.
4. 학생회 예산 편성, 결산 및 감사에 관한 사항.
5. 학생 자치활동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.
6. 학생 상벌 규정에 관한 사항
7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.

제5조(회의)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.(단, 가부 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)

제6조(간사) ① 본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.

② 간사는 학생지도업무 주무 팀장이 된다.

제7조(회의록)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 하여야 한다.

②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이 서명한 명단을 첨부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1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.